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1009 2023년 9월 1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1일, 송도호 의원(찬성자 26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23년 9월 11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송도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건설약자인 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여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사회보험료 "분담분 중 일부를"를 "분담분을"로 개정함(안 제9조제2항).
- (2) 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함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'21.7.1일부터 건설약자인 일용근로자 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사 업에 있어서, 그동안 서울시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분담분 일부를 지원하던 것에서 사회보험료 분담분 전액을 지 워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한편.
-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분담금과 건설사업자에 대한 고 용개선장려금 지원사업이 본 조례에서 현행 일몰규정인 '23.12.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서, 조례 제8042호 부칙 제2조(유효기간)의 유효기 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임.

시장이 정한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, 지원규모,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

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

[표] 신·구조문 대비표 혀 했 개 정 안 제9조 (고용개선지원)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 제9조 (고용개선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 강·국민연금보험료 **분담금 중 일부를** 사 ·국민연금보험료 **분담금을** 사업비에 반 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. 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 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
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

부칙

제1조 (생략)

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칙

<u>제1조 (현행과 같음)</u> <삭 제>

- 먼저, 안 제9조제2항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·군민연금보험료를 사업비에 반 영하여 현행 '분담금 중 일부'를 지원하던 것에서 '분담금' 전액 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- 이와 관련하여 '21.7.1일부터 서울시는 시 및 투자·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사회보험료 본인 분담금의 최대 80%까지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
- 이에 '21.7월부터 '23.4월까지 22개월 동안 서울시가 지원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는 총 약 7억 54백만원인 것으로 나 타났고, 이는 '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4억 18백만원에 해당함.

[표]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급현황('21.7.~'23.4.)

지급시기	사회보험료 (국민연금+건강보험)		국민연금		건강보험	
16 1 1	인원(명)	금액(천원)	인원(명)	금액(천원)	인원(명)	금액(천원)
계	10,527	754,075	4,296	372,990	6,231	381,085
'23.1.~'23.4.	1,357	107,801	537	52,647	820	55,154
'22.1.~'22.12.	5,610	418,020	2,271	206,648	3,339	211,372
'21.7.~'21.12.	3,560	228,254	1,488	113,695	2,072	114,559

- 참고로, 같은 기간('21.7.~'23.4.) 동안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고용개선 장려금은 1,237개 현장 중 276개(22%) 현장에 12억 1백만원을 지원하였고, 이는 '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6억 94백만원에 해당함.
- 현행 조례 제9조(고용개선 지원) 제1항에서는 발주청과 건설사 업자에게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 고 있으며.
-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각각 시장으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분담금 일부 지원과 건설일 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 개선장려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면서,
- 같은 조 제4항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현재 만 35세 미만 청년층 근로자와 월 233만 원('23년 생활임금 고시 월급 기준) 미만 내국인 저임금 근로 자를 대상으로 월 8~12일 근무시 사회보험료 분담금의 60% 를, 월 13일 이상 근무시 80%를 지원하고 있고.

o (지원기준) 사회보험료(국민연금·건강보험) 요율

- 근로일수 따라 본인 부담분 최대 80% 지원

대 상	기 준	지원규모(월간 근로일수별)
청년층 근로자	만35세 미만	8 ~12일 : 60% 지원
저임금 근로자	월 233만원 미만	13일 이상 : 80% 지원

※ (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) '23년 생활임금 고시 월급 2,331,813원 【적용 233만원】

- (지원방법) 건설공사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사후 정산
- ㅇ (적용대상) 서울시, 투자 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



- 고용개선장려금의 경우도 서울시가 정한 기준¹)에 따라 사업비 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음.
- 상기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분담금 일부 지원과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효과에 대해 서울시 분석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, 지원 후 청년층 월평균 근로일수는 1일 증가하였고, 7일이하 근무 비율은 6%가 감소하였으며, 청년층의 국민연금과건강보험 가입률은 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[표]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분석

구 분		사회보험료 지원 이전 ('20.7.~'21.6.)	사회보험료 지원 이후 ('21.7.~'22.6.)	증감	
	전체	월평균 근로일수	9.8 일	10.4 일	+ 0.6 일
고용안정	근로자	7일 이하 비율	52 %	48 %	- 4 %
지표 청년층	ᅰᆲ	월평균 근로일수	10.0 일	11.0 일	+ 1.0 일
	7일 이하 비율	52 %	46 %	- 6.0 %	
청년층 비율		8 %	7 %	- 1 %	
내국인 비율		89 %	93 %	+ 4 %	
사회보험	전체	국민연금 가입률	23 %	22 %	- 1 %

1) 고용개선장려금 지급

- ① 상시고용을 촉진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(최대 50%)를 지급한다.
- ② 상시고용 평균비율 대비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- ③ 현장의 상시고용비율/상시고용 평균비율은 "2"를 초과하지 않는다.
- ④ 내국인 고용 90%이상인 사업장에 한정한다.

	근로자	건강보험 가입률	34 %	37 %	+ 3 %
청년층	국민연금 가입률	37 %	38 %	+ 1 %	
	건강보험 가입률	37 %	38 %	+ 1 %	

[출처: One-PMIS 노무비명세자료]

- 이에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년층 건설업 유입 유도를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분담금 지원 확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,
-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게 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이 140% 가량 증가(연간 약 6억원)하여 고용개선장려금을 합할 경우 연 간 약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임.

[표] 소요예산 * '22년 기준

구분	현 행 (일부 지원)		금액확대 (전액 지원)	
	인원(명)	금액(천원)	인원(명)	금액(천원)
계	3,339	418,020	3,339	586,259
청년층	1,065	265,496	1,065	344,211
저임금	2,274	152,524	2,274	242,048

- 다음으로, 안 조례 제8042호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삭제와 관련하여, 현행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회보험료 지원과고용개선장려금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즉, 2023.12.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은향후 지속적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임.
- '21.5.20일 본 조례 개정 당시 이처럼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두었던 사유는 시범적용을 통해 그 효과와 지속여부를 검증하겠

다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, '21.7월부터 '23.4월까지 22개월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서울시가 보고하고 있고,

- 지금의 건설시장에서 국내 청년인력 부족문제가 건설공사 품질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각한 단계에 와있다는 점 을 감안할 때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건설현장에서의 국내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숙련된 건설근로자 양성 및 이를 통한 건설 공사 품질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참고로, 서울시 건설혁신과가 건설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²), 사업자는 85.5%, 근로자는 92.0%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, 전문가 8인 중 7인이 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.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 없음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²⁾ 건설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

^{- (}사업자) 엄격한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 한정 → 효과상승 위해 **지원대상 확대 필요** 설문조사* ▶ [평가: 궁정(85.5%), 연장(69.5%) -사유: 청년충 고용효과]

^{- (}근로자) 사회보험료 일부지원으로 근로자 본인 지원여부 미인식 → 체감효과 위해 근로자 부담분 전부지원 필요 설문조사* ▶ [평가: 긍정(92.0%), 연장(83.0%) -사유: 월8일 이상 근로효과]

^{*} 출처: 2022년 서울시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(건설혁신과)

^{- (}전문가) 근로자 고용개선 위한 지속적인 지워 필요(8인 중 7인)

[·] 고령화 가속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됨에 따라 청년층 유입 없이는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저하 우려

[·] 코로나 시기 청년층 배달라이더 전업, 코로나 이후 청년층 (재)유입 위해 유인책 지속 필요

[·]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 필요(지원 대상 및 금액 상향)

- 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도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009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8월 11일 발 의 자:송도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김경훈, 김길영, 김성준,

김영철, 김춘곤, 김형재, 남창진, 민병주, 박강산, 박승진, 박영한, 박칠성, 봉양순, 왕정순, 유정인, 유정희, 이병도, 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 한 신, 홍국표 의원(26 명)

1. 제안이유

○ 건설약자인 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보험료 "분담분 중 일부를"를 "분담분을"로 개정함.(안 제9조제 2항)
- 나. 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건설산업기본법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중 "분담금 중 일부를"을 "분담금을"로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Ⅱ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 (고용개선지원) ① (생 략)	제9조 (고용개선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 근로자의 국민건강·국민연금보 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.	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·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지원할 수 있다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 부칙	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2항 및 제3 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 지 그 효력을 가진다.	<삭 제>